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촌인구의 지속감소·고령화,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촌지역개발을 촉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나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시책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군의 책무(안 제3조)

- 친환경농업 등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 중점 육성
-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나. 농업인 등 지원범위 명시(안 제4조)

- 정부·강원도 시책중 전액 국비, 국비+지방비 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 추가 지원
- 군 자체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지원

다. 농업·농촌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농업의 특성화·차별화·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개발, 수출농업육성, 농산물 유통·판촉사업, 미래전문인력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 연구개발·보급사업, 산림조성·경영, 임업의

구조개선 등

- 도·농 교류촉진, 농산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사)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자립과 활성화 촉진
- (사)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의 안정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라. 농림업·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 경쟁력 강화 예산 확보(안 제6조)

- 농림업 경쟁력 강화 시책 예산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1.10.18~11.8(21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산림기본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군의 책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읍·면간의 농림업 균형발전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보전과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 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2.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특산물 명품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등 농업·농촌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사업
6. 농림축산물의 유통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
7.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농업인 자녀에 한함)
8. 2세 농업인의 전업농 육성 사업
9. 농림축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0.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소비촉진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11. 산림의 조성·관리·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농산촌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협력 지원사업
13.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14.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5. 농축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6. (사)평창군농어업회의소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17.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사)평창그린투어사업단 육성을 위한 사업
18.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20.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2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산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농림업·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정부 및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 자체 시책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발생 비용 없으며, 향후 사안에 따라 비용 산출이 달라질 수 있음

2. 미첨부 사유

- 농촌인구의 지속감소·고령화,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촌지역개발을 촉진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농업·농촌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정부 및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시책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비용 발생이 없으며, 향후 사안에 따라 비용 산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축산과장 이 상 필
연락처	(033) 330 -1302

조례제정 관계법령(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협정”이라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